

## “꼭 필요한 자료만” ...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

- 관세청, 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시행
- 성실·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,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

-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편안을 5월 26일 행정예고 하였다.
  -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,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.
-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「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」는 기존의 ‘모든 수입 기업의, 모든 수입 건에 대한,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’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, 연 최초 1회,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.

①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\*(AEO, ACVA)과 전년도 납세실적\*\*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.

\* AEO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, ACVA: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

\*\*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 로그인 ⇨ 정보조회 ⇨ 자사실적 ⇨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⇨ 실적조회 (전년도 1월~12월)

②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\*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,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,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.

\* 다른 품목이라도, 동일 과세자료(계약서, 내역서 등)로 입증되는 경우 ‘같은 조건’으로 간주

③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, 권리사용료, 수수료 등 8개 분야\*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'분야별 1개 이상'으로 명시하고,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'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'로 자료 제출을 갈음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.

\* ①권리사용료, ②생산지원, ③수수료, ④운임·보험료, ⑤용기·포장비용, ⑥사후귀속이익, ⑦간접지급금액, ⑧특수관계자 거래

④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'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'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여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.

○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,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.

○ 한편,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,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,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.

□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'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'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○ 다만, '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'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.

□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"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,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 라고 밝혔다.

- 또한 “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5월 28일, 29일에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\*를 개최할 예정”이라며, “우리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\* [1차] 서울 5.28.☞ 14:00~15:30 서울세관 대강당 / [2차] 부산 5.29.☞ 14:00~15:30 부산세관 교육실

- 붙임 1.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**
2. ‘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’ 인포그래픽
  3. 가격신고 제도 개요

담당 부서	관세청 심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용철 (042-481-78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용익 (042-481-7628)



**<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>**

분야 (8개 분야)	과세가격결정자료(분야별 1개 이상)
권리사용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</li> <li>○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</li> </ul>
생산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</li> <li>○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</li> </ul>
수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수료·중개료 등 계약서</li> <li>○ 수수료·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</li> </ul>
운임·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운임·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계약서</li> <li>○ 운임·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</li> </ul>
용기·포장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포장용역계약서, 용기임대 계약서</li> <li>○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</li> </ul>
사후귀속이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입 후 전매·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·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</li> <li>○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</li> </ul>
간접지급금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</li> <li>○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</li> <li>○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</li> <li>○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</li> </ul>
특수관계자 거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</li> <li>○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</li> </ul>



#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 편의 확대

## 01 과세자료 제출 생략

- 납세협력 프로그램 (AEO\*, ACVA\*\*)
- 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

\*AEO :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 
\*\*ACVA :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



## 02 최초 수입 건만 과세자료 제출

-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(연 1회 제출)



## 03 과세자료 제출 목록 구체적 규정

- 수입 거래 형태별, 과세 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규정 → 8개분야



## 04 과세자료 사후 제출 허용

- 기업의 과세자료 준비 기간 확보 → 신속 통관 지원



**납부실적 확인 방법**

유니패스(unipass.customs.go.kr) → 정보조회 → 자사실적 → 수출수입 환급 납세실적  
→ '제세납부실적' 조회(직전연도 1년 조회)



### 붙임3

### 가격신고 제도 개요

- (원칙)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, 과세가격 결정자료(이하 과세자료)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

신고 종류	내 용	신고 방식*
가격신고(법 § 27①)	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	가격신고서
납세신고(법 § 38①)	해당 물품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	수입신고서
수입신고(법 § 241①)	해당 물품의 품명·규격·수량 등에 관한 신고	

\*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통합하여 신고, 가격신고는 가격신고서 별도 제출

- (대상) ‘원칙적 신고, 예외적 생략’으로 원칙 모든 수입물품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 생략 및 신고 생략제외 물품 규정(관세규칙 § 2)



#### ○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 시 계약서 등 과세자료 제출 의무

- 관세법 시행령 제15조(가격신고) ⑤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. (단서 생략)
  1. 송품장
  2. 수입물품 구매계약서
  3. 다음 각 목의 자료
    - 가.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
    - 나.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
      - 1)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(相計)하는 금액
      - 2)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
      - 3)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
    - 다.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(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)
    - 라.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
  4.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 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
  5.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